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05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3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개정안의 제안배경	6
3. 개정안의 검토	8
(1) 감사위원회의 설치	8
(2) 감사원 외부 감사 요청	12
(3) 감사결과의 공표 및 보고	15
[참고] 개정안 조문대비표	17

I. 제안경위

1. 광규택의원안

가. 발 의 자 : 광규택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3. 17.

다. 회 부 일 : 2025. 3. 18.

2. 윤준병의원안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3. 25.

다. 회 부 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광규택의원안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 심각한 비리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내·외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로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2. 윤준병의원안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어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임.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드러난 인사비리 등을 보면 내부 감사에 신뢰를 가지기는 어려움.

이에,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5조의4제1항 신설).

나.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1명은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안 제15조의4제3항 신설).

다. 감사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 제외)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4제4항 신설).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함.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음(안 제15조의4제5항 신설).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재 법률상 근거없이 규칙에 따라 설립·운용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거나(곽규택의원안) 법률로 규정하고(윤준병의원안),

추가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곽규택의원안).

구 분	현 행	곽규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감사위원회 설치	규칙으로 설치	법률로 설치	
세부사항	규칙에 규정	<u>규칙에 위임</u>	<u>법률에 규정</u>
외부 감사	<신 설>	감사위원회는 추가 감사 필요시 의결로 <u>감사원에 외부 감사 요청 가능</u> (감사원은 6개월 이내 감사결과 통보)	없음
감사결과 공표·보고	<신 설>	중앙선관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u>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중앙선관위</u> <u>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u> 하고, <u>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u>	없음

2. 개정안의 제안배경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¹⁾ 제1공화국 시기 선거를 관리하던 선거위원회는 내무부 부속기관이었으나, 3·15부정선거²⁾ 이후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됨.³⁾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고위공무원 자녀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 등은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⁴⁾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 제기는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이루어진 재검표 과정에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⁵⁾ 형상기억종이 투표지⁶⁾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된 바 있음.⁷⁾

1)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를 의미함.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출처: https://museum.nec.go.kr/museum2018/bbs/7/3/1/20170912155756377100_view.do?article_id=20171226175208636100&article_category=12)

4) 조선일보(2025.4.8.), “선관위, 고위공무원 자녀 등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진행”
대구신문(2025.3.4.), “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5)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푸른색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겹쳐 인쇄된 투표지

6) 접힌 자국이 없는 뾰뚱한 종이 투표지

7) 제22대국회 제422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 p.98.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⁸⁾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 권한쟁의심판⁹⁾에서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물론, 현재도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설치하여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 조사방법,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설치함에 따라 언제라도 관련 규정을 기관의 편의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하거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와 투표·개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조은희 위원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연수구 송도2동 제6투표소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총 투표수 1974표 중 약 15%에 달하는 294표가 무더기로 무효 처리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재검표 과정 중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형상기억 종이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일장기 투표지는 1000매 이상 나왔는데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신지 또 선관위원장을 여러 차례 역임한 총장님 경험으로 볼 때 이것들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8) 문화일보(2025.3.12.), “가족채용 비리 묵인, 외부통제는 무풍지대...괴물 선관위 만들었다”

9) 2023헌라5(2025.2.27.)

3. 개정안의 검토

(1) 감사위원회의 설치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특혜 채용의혹이 불거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자정기능 강화노력¹⁰⁾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설치된 것임.

개정안은 모두 규칙이 아닌 법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규택의원안이 감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윤준병의원안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광규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감사위원회 설치	규칙으로 설치	법률로 설치	
세부사항	규칙에 규정	규칙에 위임	법률에 규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¹¹⁾ 감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해서 현행 규칙이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 필요성과 조사 기준, 연간 감사계획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¹²⁾ 윤준병의원안은 사무의 종류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특혜 채용의혹 이후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중심(외부 6명, 내부 1명)의 감사위원회를 설치(2024.1.1.)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2024.1.1.)하였음.

11) 광규택의원안은 세부사항을 모두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칙과 윤준병의원안을 중심으로 비교함.

별로(선거·정당사무, 예산집행사무, 비위행위 등) 심의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국회 및 소관 상임위의 감사요구 사항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있음.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칙이 7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¹³⁾ 윤준병의원안은 9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위원으로 선관위 공무원 외에 법관 1명과 감사원 공무원 1명을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음.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규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데 반해, 윤준병의원안은 현재 호선¹⁴⁾으로 선출하는 부

12)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이 실시하는 연간 감사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14) “호선(互選)”이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을 의미함. (국립국어원

위원장과 동일하게 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 밖에 위원 임기와 의결정족수는 현행 규칙과 윤준병의원안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칙 및 개정안의 비교 》

구 분		현행 규칙	윤준병의원안
심의사항		1. 주요 감사사건 (비위행위, 성범죄, 감사관 등이 지정한 사건)조사 필요성·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실시 연간 감사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1. 선거·정당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 사무 3. 금품 및 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소관상임위 감사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 감사필요 의결사항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위원회의결), 부위원장(호선) 포함 7명의 위원	위원장(호선), 부위원장(호선) 포함 9명의 위원
	외부위원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에서 위촉(6명)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에서 위촉(6명)
	내부위원	중앙선관위 사무처 국장 중 임명(1명)	선관위 공무원 1명, 법관1명 감사원 공무원 1명(3명)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현행과 동일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현행과 동일

※ 광규택의원안은 심의사항, 구성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위임

현재 법률상 근거없이 규칙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내부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감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지(곽규택의원안), 법률로 규정할지(윤준병의원안)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필요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준병의원안의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사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며,¹⁵⁾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헌법상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법관 외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5) 일반적으로 감사권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상의 권한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하부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을 정점으로 한 전체 법질서의 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임.

(2) 감사원 외부 감사 요청

곽규택의원안은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곽규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외부 감사	<신 설>	감사위원회는 주가 감사 필요시 의결로 <u>감사원에 외부 감사 요청 가능</u> (감사원은 6개월 이내 감사결과 통보)	없음

이는 최근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 권한쟁의심판¹⁶⁾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예외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권한쟁의심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감사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위헌소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16) 2023헌라5(2025.2.27.)

《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결정문(2023헌라5) 》

(참고)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청구인(감사원)

“헌법 제97조는 피청구인에게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관리가 그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청구인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부 기관이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42조 제1항은 피청구인이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바, 대통령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청구인과 그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이상에서 살핀 우리 헌법의 체계 및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전면 배치되며,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를 침해할 우려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행정부 외부의 독립된 조사주체(특별감사관 또는 특별점검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제정법¹⁷⁾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 제정안의 심사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736호),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877호)

(3) 감사결과의 공표 및 보고

곽규택의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곽규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감사결과 공표·보고	<신 설>	중앙선관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 <u>감사결과</u> 를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u>공표</u>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u>보고</u>	없음

이는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결과를 숨기지 않고 공표·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외부감사가 아닌 내부감사 결과 일체를 그대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¹⁸⁾도 있으므로 공표해야 하는 감사결과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위원회 의결로써 예외적으로 비공개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8) 예를 들어, 선거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투표용지 인쇄, 이송, 보관 등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감사 결과 일체를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 광규택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4(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운영, 감사 결과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5조의5(외부 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의6(감사결과의 공표 및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5 후단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통보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윤준병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4(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

	<u>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u> ⑧ <u>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⑨ <u>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	---